

○ e-안심팩토링대출용 통합약정서(판매기업용) 개정 대비표

1. 주요 개정내용

구 분	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약관, 약정서명	e-안심팩토링대출용 통합약정서(판매기업용) (구 하나은행)	e-안심팩토링대출용 통합약정서(판매기업용)	(구)하나은행과 (구)한국외환은행의 전산통합에 따라 통합은행에서 사용하는 약정서명에 (구 하나은행) 명칭 삭제
약관, 약정서 内 타 약관, 약정서명	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	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	전산통합으로 인한 타 약관명 변경내용 반영

2. 개정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
3. 기 거래고객에 대한 적용

: 개정된 내용은 개정일 이후 신규, 연장, 갱신 등 약정분부터 적용